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39
----------	-------

발의연월일 : 2026. 5. 21.

발 의 자 : 정청래 · 강준현 · 김영환  
권향엽 · 이성윤 · 이연희  
이연주 · 김기표 · 황명선  
박균택 · 한정애 · 안도걸  
양부남 · 서삼석 · 조인철  
김원이 · 박지원 · 김교홍  
문금주 · 신정훈 · 정진욱  
정준호 · 이재관 · 이개호  
주철현 의원(2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이자 상징임.

그러나 최근 유력 정치인, 유튜버 등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과 광주 시민 등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희생자, 유가족, 관련자 등을 공공연하게 조롱하거나 모욕함으로써 당사자는 물론 국민 전체에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2차 가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

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5·18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함(안 제8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을 “5·18민주화운동 및 희생자, 유족, 관련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생략) ② (생략)</p>	<p>제8조(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금지) ① ----- ----- 5·18민주화운동 및 희생자, 유족, 관련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 ----- -----.</p> <p>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